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00억 원을 말한다.

제24조의9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5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총이익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 ⑤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업을 말한다.

1. 폐업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2. 폐업하려는 영업부문의 총이익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총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인 폐업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가. 삭제 <2017. 10. 17.>		
나.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1호	6,000
다.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	6,000
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	3,000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3호	3,000
바. 법인인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	법 제69조	6,000

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3,000
아. 삭제 <2016. 7. 28.>		
자. 은행이 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	10,000
차. 은행이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4항	1,000
카.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	3,000
타.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3	6,000
파. 삭제 <2017. 10. 17.>		
하.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1호	3,000
거.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6호	10,000
너.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6,000
더. 은행이 법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2	6,000
러. 은행이 법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3	6,000
머. 은행이 법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4	6,000
버. 은행이 법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2항제2호	3,000
서. 은행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법 제69조	10,000

피한 경우	제1항제7호의5	
어.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5호	2,000
저. 법인인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8호	10,000
쳐.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8호	5,000
커.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9호	3,000
터. 삭제 <2021. 3. 23.>		
퍼. 은행이 법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69조 제3항	1,800
허. 은행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11호	2,000
고.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7호	200
노.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8호	200

